

# 재입학 규정

제정 2013. 3. 1. 개정 2013. 7. 1.  
개정 2013. 11. 15. 개정 2014. 3. 1.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대경대학교(이하 "본 대학"이라 한다)의 학칙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재입학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3.7.1.>

**제2조(재입학 대상)** 재입학은 다음 각 호의 1에 의하여 퇴학 또는 제적된 자에 한하여 허가한다.

1. 자퇴한 자. 단, 1학기도 이수하지 않고 자퇴한자는 제외한다. <개정 2014.3.1.>
2. 휴학기간 종료 후 복학학기 수업일수 4분의1선이 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복학하지 아니하여 제적된 자
3. 정당한 이유 없이 매학기 소정기간에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자

**제3조(재입학 시기)** ① 재입학하고자 하는 당해학기 수업일수 4분의 1선 이내까지 신청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7.1., 2014.3.1.>

② 재입학은 학기단위로 실시한다. 단, 졸업탈락자는 학기 구분 없이 재입학을 신청할 수 있다.

**제4조(제출서류)** 재입학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다.

1. 재입학원서 1부 <별지 제1호 서식>
2. 성적증명서 1부

**제5조(재입학 허가)** ① 재입학 여석은 재입학의 허가년도를 기준으로 모집단위별 1~2학년 학생 중 제적자 총수에서 다시 대학에 들어오거나 들어올 편입, 재입학자 총수를 제외한 인원만큼 재입학을 허가하며, 총 학생정원의 범위를 넘지 않는다.(편입학 모집인원 산출시 재입학 인원을 사전에 조사 고려하여 인원을 산출하여 반영한다.)

② 재입학 신청인원이 재입학 허용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의 순으로 허가한다.

1. 취득학점이 많은 자
2. 평점평균이 높은 자
3. 고학년인 자

**제6조(재입학 제한)** ① 재입학은 정원에 여석이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허가한다.

② 학칙 제70조 1항에 해당하는 징계 제적자, 성행불량 제적자는 재입학을 제한한다. <개정 2013.7.1.>

**제7조(재입학 절차)** ① 재입학을 원하는 자는 재입학원서를 작성하여 지도교수의 상담과 해당 학부(학과)장의 추천을 거쳐 구비서류를 교학처에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3.1.>

② 교학처는 재입학 지원자에 대해 당해학기 수업일수 4분의 1선까지 총장은 이를 허가 할 수 있다. <개정 2013.7.1., 2013.11.15., 2014.3.1.>

③ 교학처는 재입학 희망자 허가 여부를 개별 통보하고, 해당 학부(학과)장에도 이를 통보한다. <개정 2014.3.1.>

**제8조(등록)** 재입학 허가자는 해당 학기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.

**제9조(재입학 학부(학과))** ① 재입학 할 수 있는 학부(학과)는 제적 당시의 학부(학과)로 한다. 다만, 학부(학과)명칭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학부(학과)로 하며, 학과개편으로 인해 전공으로 세부 분류된 경우 세부 전공선택은 지도교수와의 면담으로 학생 본인이 결정한다.

② 삭제 <2013.7.1>

**제10조(재입학 학점인정)** ① 재입학자의 학점 인정은 제적 또는 자퇴 당시에 취득한 학점 전부를 인정한다.

② 재입학자가 제적 전 졸업이수학점과 현행 졸업이수학점에 차이가 있을 시에는 현행 졸업 이수학점에 따른다.

부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